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49
----------	----

제출연월일 : 2010.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 제안이유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송도연장 6개 역사의 시설물과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사의 미출자된 토지 등에 대한 회계검증을 완료한 후 인천메트로에 현물출자 1건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메트로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단위 : m<sup>2</sup>/천원)

구분	위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문학동 산 70 외 62필지	11,407.82	648,172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 일대
시설물	6개 역사의 토목 외 10건	-	669,170,877	송도연장역사

### ※ 기준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설비 : 건설사업비 지출액을 적산, 자산가액으로 산출

## 참고자료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

■ 총괄표 .....	3
■ 재산의 목록(취득) .....	4
■ 재산의 목록(처분) .....	8
■ 관련 자료	
① 인천메트로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	25
■ 관계법령 .....	34

## ■ 총괄표

### 취득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당초		1,600	2,024,635.40	342,601,292	
	변경					
	증감					
건물	당초	47		622,047.19	1,350,525,594	
	변경					
	증감					
기타	당초	1			18,000,000	
	변경					
	증감					

### 처분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당초		228	408,288.06	412,765,496	
	변경		291	419,695.88	413,413,668	
	증감		63	11,407.82	648,172	
건물	당초	39		144,277.95	44,646,715	
	변경					
	증감					
기타	당초					
	변경	11			669,170,877	
	증감	11			669,170,877	

##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m<sup>2</sup>, 천 원)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2,646,682.59	1,711,126,886			
2010-1	토지	부평구 부평동	663	대	105,987.00	11,570.00	10,413,000	자원봉사종합 센터 건립	사회복지 봉사과장	당초
2010-2	토지	서구 경서동	82	전	2,731.00	2,731.00	497,042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조성	노인정책 과장	"
	"	"	83	전	4,215.00	4,215.00	767,130	"	"	"
2010-3	토지	부평구 부평동	663	대	105,987.00	9,917.40	8,925,660	영유아보육 종합 지원센터 건립	여성정책 과장	"
2010-4	건물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 기장 부지내			12,000.00	33,670,000	빙상경기장 건립	체육진흥 과장	"
2010-5	건물	중구 신흥동3가	69-3외 1필지			13,200.00	6,000,000	공동물류센터 건립	항만공항 정책과장	"
2010-6	토지	서구 심곡동	120외 419필지		717,645.00	592,091.00	86,316,535	서구 종합 경기장 건립	아시아경기 대회 지원 본부장	"
	건물	서구 연희동	387외 419필지			175,700.00	345,660,000	"	"	"
	토지	계양구 서운동	95-5외 202필지		434,469.00	381,826.00	39,229,253	계양경기장 건립	"	"
	건물	"	111외 202필지			19,000.00	85,751,447	" (배드민턴)	"	"
	"	"	"			1,100.00	4,964,553	" (양궁)	"	"
	토지	남동구 만수동	776-1외 321필지		354,849.00	307,082.00	53,969,535	남동경기장 건립	"	"
	건물	남동구 수산동	409-1외 321필지			2,500.00	8,000,000	" (럭비)	"	"
	"	"	"			29,700.00	95,026,000	" (농구)	"	"
	건물	남구 문학동	482			14,300.00	34,356,000	문학수영장(수영)	"	"
	토지	서구 가좌동	447-1외 215필지		186,763.00	160,089.00	35,530,068	십정경기장 건립	"	"
	건물	서구 십정동	101-2외 215필지			19,400.00	55,797,800	" (스쿼시)	"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면 득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6	건물	서구 십정동	101-2외 215필지			1,700.00	4,889,200	십정경기장 (테니스)	아시아경기 대회 지원 본부장	당초
	토지	강화군 국회리	31-3외 99필지		105,221.00	80,268.00	5,401,951	강화경기장 건립	"	"
	건물	"	46-4외 99필지			16,500.00	38,724,300	" (태권도, 우수)	"	"
	"	"	"			1,100.00	2,581,700	" (BMX)	"	"
	건물	동구 송림동	11	대		24,800.00	54,546,000	송림경기장 건립	"	"
	토지	연수구 선학동	68-8외 331필지		500,271.70	451,878.00	100,739,895	선학경기장 건립	"	"
	건물	"	82외 331필지			12,700.00	73,995,000	"	"	"
2010-7	토지	서구 심곡동	213	대	594.00	594.00	292,248	인천지방소방학 교 건립	소방행정 과장	"
	"	"	212	전	853.00	853.00	105,772	"	"	"
	"	"	산47	임	21,521.00	21,521.00	413,203	"	"	"
	건물	"	213-1외 3필지			5,874.00	7,480,000	" (본관동)	"	"
	"	"	"			2,310.00	2,130,000	" (구조훈련장)	"	"
	"	"	"			3,135.00	2,850,000	"(옥내종합훈련 센터)	"	"
2010-8	항공 기						18,000,000	소방 헬리콥터 구입	"	"
2010-9	건물	연수구 송도동	12-1			6,582.31	16,941,516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	"			3,652.04	8,091,913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	"
	"	"	"			250.91	817,247	인천대학교 박물관	"	"
	"	"	"			2,526.64	8,945,287	인천대학교 정보전산원	"	"
	"	"	"			16,920.81	31,482,014	인천대학교 자연대학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면 득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9	건물	연수구 송도동	12-1			14,219.54	22,775,099	인천대학교 도서관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	"			10,452.93	18,104,536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	"	"
	"	"	"			25,651.30	46,648,320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	"
	"	"	"			11,531.53	22,787,955	인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	"
	"	"	"			6,303.42	10,732,295	인천대학교 사회/법과대학	"	"
	"	"	"			9,393.49	14,739,975	인천대학교 인문대학/어학원	"	"
	"	"	"			7,205.87	12,331,069	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 경영대학	"	"
	"	"	"			5,524.03	12,115,345	인천대학교 컨벤션센터	"	"
	"	"	"			6,207.46	10,239,917	인천대학교 예체능대학/부설 연구소	"	"
	"	"	"			8,105.57	14,448,682	인천대학교 복지회관	"	"
	"	"	"			4,824.52	9,345,921	인천대학교 학생복지회관	"	"
	"	"	"			6,678.13	22,139,576	인천대학교 강당 및 공연장	"	"
	"	"	"			1,712.20	3,144,352	인천대학교 시민대학	"	"
	"	"	"			3,469.81	6,736,705	인천대학교 체육관	"	"
	"	"	"			6,102.97	13,448,821	인천대학교 스포츠센터/골프장	"	"
	"	"	"			17,441.54	33,332,037	인천대학교 기숙사	"	"
	"	"	"			2,387.82	5,054,644	인천대학교 게스트하우스	"	"
	"	"	"			194.60	299,832	인천대학교 청람지 휴게소	"	"
	"	"	"			1,222.91	2,291,022	인천대학교 학군단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9	건물	연수구 송도동	12-1			945.57.00	2,306,966	인천대학교 어린이집	인천대학 교총장	1차 변경
	"	"	"			99.37.00	206,746	인천대학교 온실	"	"
	"	"	"			215.14.00	353,727	인천대학교 운동장본부석	"	"
	"	"	"			464.61.00	1,866,327	인천대학교 전망타워	"	"
	"	"	"			35,800.82	33,410,348	인천대학교 지하주차장	"	"
2010-10	건물	중구 운서동	1632외 16필지			7,934.82	11,473,000	밀라노디자인시 티·트리엔날레 관 기부채납	경제청장 (용유무의 개발과장)	"
2010-11	건물	계양구 방축동	108-1외 15필지			14,998.00	57,975,400	어린이과학관 건립	아동청소 년과장	3차 변경
2010-12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6			28,007.51	39,517,000	인천종합비즈니스 센터건립	기업지원 과장	"
					이	하	빈	칸		



##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m<sup>2</sup>, 천 원)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563,973.83	1,127,231,260			
2010-1	토지	남구도화동	26-3	전	46.00	46.00	23,230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원 담당관	1차 변경
	"	남구도화동	26-7	대	132.00	132.00	75,240	"	"	"
	"	남구도화동	26-8	대	228.00	228.00	129,960	"	"	"
	"	남구도화동	26-15	대	83.00	83.00	47,310	"	"	"
	"	남구도화동	26-21	전	238.87	238.87	108,924	"	"	"
	"	남구도화동	26-22	잡종지	268.00	268.00	137,484	"	"	"
	"	남구도화동	26-24	잡종지	136.00	136.00	69,768	"	"	"
	"	남구도화동	26-25	전	79.00	79.00	36,024	"	"	"
	"	남구도화동	26-26	대	149.00	149.00	84,930	"	"	"
	"	남구도화동	26-27	대	235.00	235.00	133,950	"	"	"
	"	남구도화동	26-28	전	734.00	734.00	334,704	"	"	"
	"	남구도화동	26-31	전	83.00	83.00	37,848	"	"	"
	"	남구도화동	26-32	전	198.00	198.00	90,288	"	"	"
	"	남구도화동	26-33	전	585.00	585.00	266,760	"	"	"
	"	남구도화동	26-34	전	129.00	129.00	58,824	"	"	"
	"	남구도화동	26-35	전	129.00	129.00	58,824	"	"	"
	"	남구도화동	26-36	전	317.00	317.00	144,552	"	"	"
	"	남구도화동	26-37	전	1,447.05	1,447.05	659,855	"	"	"
	"	남구도화동	26-42	대	159.00	159.00	90,630	"	"	"

※관리번호 : 건수 단위로 동일한 번호 부여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분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26-43	대	195.00	195.00	111,150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 원담당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26-51	대	370.00	370.00	210,900	"	"	"
	"	남구 도화동	26-53	잡종 지	188.00	188.00	96,444	"	"	"
	"	남구 도화동	26-54	대	350.00	350.00	199,500	"	"	"
	"	남구 도화동	26-55	잡종 지	254.00	254.00	130,302	"	"	"
	"	남구 도화동	26-56	잡종 지	208.00	208.00	106,704	"	"	"
	"	남구 도화동	26-60	잡종 지	149.00	149.00	76,437	"	"	"
	"	남구 도화동	26-62	대	69.00	69.00	39,330	"	"	"
	"	남구 도화동	26-68	대	40.00	40.00	22,800	"	"	"
	"	남구 도화동	26-69	대	232.00	232.00	132,240	"	"	"
	"	남구 도화동	26-70	대	76.00	76.00	43,320	"	"	"
	"	남구 도화동	26-71	전	131.00	131.00	59,736	"	"	"
	"	남구 도화동	26-73	잡종 지	24.00	24.00	12,312	"	"	"
	"	남구 도화동	26-74	전	121.00	121.00	55,176	"	"	"
	"	남구 도화동	26-75	잡종 지	52.00	52.00	26,676	"	"	"
	"	남구 도화동	26-76	전	73.00	73.00	33,288	"	"	"
	"	남구 도화동	26-78	전	290.00	290.00	132,240	"	"	"
	"	남구 도화동	27-5	잡종 지	135.00	135.00	69,255	"	"	"
	"	남구 도화동	32-1	대	112.00	112.00	63,840	"	"	"
	"	남구 도화동	33-6	대	40.40	40.40	24,159	"	"	"
	"	남구 도화동	33-8	대	62.50	62.50	35,625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분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33-10	대	107.30	107.30	61,161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 기 업 민 원 담 당 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33-11	대	97.50	97.50	55,575	"	"	"
	"	남구 도화동	33-12	대	120.50	120.50	68,685	"	"	"
	"	남구 도화동	33-14	대	60.00	60.00	34,200	"	"	"
	"	남구 도화동	33-15	대	184.20	184.20	104,994	"	"	"
	"	남구 도화동	33-16	대	77.70	77.70	44,289	"	"	"
	"	남구 도화동	33-18	대	97.10	97.10	55,347	"	"	"
	"	남구 도화동	33-19	대	105.20	105.20	59,964	"	"	"
	"	남구 도화동	33-20	대	152.80	152.80	87,096	"	"	"
	"	남구 도화동	33-21	대	325.10	325.10	185,307	"	"	"
	"	남구 도화동	33-22	대	149.60	149.60	85,272	"	"	"
	"	남구 도화동	33-23	대	307.90	307.90	175,503	"	"	"
	"	남구 도화동	33-25	대	179.80	179.80	102,486	"	"	"
	"	남구 도화동	33-26	대	795.10	795.10	453,207	"	"	"
	"	남구 도화동	33-28	대	843.10	843.10	480,567	"	"	"
	"	남구 도화동	33-29	대	97.20	97.20	55,404	"	"	"
	"	남구 도화동	33-32	대	74.30	74.30	42,351	"	"	"
	"	남구 도화동	33-33	대	143.60	143.60	81,852	"	"	"
	"	남구 도화동	33-34	대	94.30	94.30	53,751	"	"	"
	"	남구 도화동	35-1	대	148.60	148.60	84,702	"	"	"
	"	남구 도화동	35-2	대	60.30	60.30	34,371	"	"	"
	"	남구 도화동	36-1	학교 용지	965.00	965.00	993,950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37-6	대	58.30	58.30	25,361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기업민 원담당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43-17	학교 용지	313.30	313.30	105,269	"	"	"
	"	남구 도화동	44-1	대	92.30	92.30	120,918	"	"	"
	"	남구 도화동	44-11	대	6.30	6.30	8,316	"	"	"
	"	남구 도화동	45-1	대	879.30	879.30	1,151,883	"	"	"
	"	남구 도화동	45-9	대	290.00	290.00	385,700	"	"	"
	"	남구 도화동	45-13	대	35.50	35.50	45,440	"	"	"
	"	남구 도화동	45-33	대	76.20	76.20	86,106	"	"	"
	"	남구 도화동	45-35	대	5.80	5.80	7,482	"	"	"
	"	남구 도화동	45-38	대	54.70	54.70	66,187	"	"	"
	"	남구 도화동	47-15	대	75.00	75.00	128,250	"	"	"
	"	남구 도화동	113-36	대	19.36	19.36	24,201	"	"	"
	"	남구 도화동	117-2	대	83.00	83.00	37,765	"	"	"
	"	남구 도화동	117-7	대	136.00	136.00	61,880	"	"	"
	"	남구 도화동	118-10	대	89.00	89.00	40,495	"	"	"
	"	남구 도화동	118-33	대	33.00	33.00	15,015	"	"	"
	"	남구 도화동	118-39	대	1.98	1.98	902	"	"	"
	"	남구 도화동	118-40	대	40.00	40.00	18,200	"	"	"
	"	남구 도화동	118-42	대	11.00	11.00	5,005	"	"	"
	"	남구 도화동	118-43	대	9.00	9.00	4,095	"	"	"
	"	남구 도화동	135-1	대	10.00	10.00	4,350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1	토지	남구 도화동	135-6	대	10.00	10.00	4,350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공 기 업 민 원 담 당 관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135-11	대	53.00	53.00	23,055	"	"	"
	"	남구 도화동	135-15	대	36.00	36.00	15,660	"	"	"
	"	남구 도화동	138-4	대	9.00	9.00	3,978	"	"	"
	"	남구 도화동	138-8	대	761.00	761.00	336,362	"	"	"
	"	남구 도화동	138-27	대	11.00	11.00	4,862	"	"	"
	"	남구 도화동	138-34	대	1.00	1.00	442	"	"	"
	"	남구 도화동	138-35	대	29.00	29.00	12,818	"	"	"
	"	남구 도화동	138-36	대	10.00	10.00	4,420	"	"	"
	"	남구 도화동	138-38	대	2.00	2.00	884	"	"	"
2010-2	토지	남구 도화동	35-8	학	692.20	536.90	553,007	도시개발공사 양여	인천대학교 총장	"
	"	남구 도화동	35-9	학	963.60	963.60	992,508	"	"	"
	"	남구 도화동	36-2	학	679.90	679.90	700,297	"	"	"
	"	남구 도화동	36-3	학	666.90	666.90	686,907	"	"	"
	"	남구 도화동	36-4	학	1,797.20	1,797.20	1,851,116	"	"	"
	"	남구 도화동	36-5	학	2,190.70	2,130.00	2,193,900	"	"	"
	"	남구 도화동	36-6	학	115.40	115.40	118,862	"	"	"
	"	남구 도화동	36-9	학	1,204.60	22.10	22,763	"	"	"
	"	남구 도화동	38-3	학	86,681.00	73,265.20	75,463,156	"	"	"
	"	남구 도화동	42-1	학	1,919.20	1,919.20	1,957,584	"	"	"
	"	남구 도화동	43-1	학	417.30	417.30	425,646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분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토지	남구 도화동	43-3	학	1,567.80	1,567.80	1,599,156	도시개발공사 양여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43-4	학	589.00	589.00	600,780	"	"	"
	"	남구 도화동	43-5	학	89.10	89.10	90,882	"	"	"
	"	남구 도화동	43-6	학	3,622.20	3,622.20	3,694,644	"	"	"
	"	남구 도화동	43-7	학	114,602.50	32,105.30	32,747,406	"	"	"
	"	남구 도화동	43-11	학	943.30	943.30	962,166	"	"	"
	"	남구 도화동	43-12	학	1,176.30	1,176.30	1,199,826	"	"	"
	"	남구 도화동	43-13	학	159.10	159.10	162,282	"	"	"
	"	남구 도화동	43-14	학	420.20	109.20	111,384	"	"	"
	"	남구 도화동	43-16	학	133.50	133.50	136,170	"	"	"
	"	남구 도화동	43-18	학	211.40	211.40	215,628	"	"	"
	"	남구 도화동	43-19	학	270.40	270.40	275,808	"	"	"
	"	남구 도화동	43-20	학	4,059.00	1,946.00	1,984,920	"	"	"
	"	남구 도화동	43-22	학	3,267.50	1,961.40	2,000,628	"	"	"
	"	남구 도화동	43-23	학	1,079.60	996.30	1,016,226	"	"	"
	"	남구 도화동	49-2	학	420.00	420.00	428,400	"	"	"
	"	남구 도화동	49-3	학	1,125.90	1,125.90	1,148,418	"	"	"
	"	남구 도화동	49-4	학	5,118.20	5,118.20	5,220,564	"	"	"
	"	남구 도화동	49-5	학	514.70	514.70	524,994	"	"	"
	"	남구 도화동	49-6	학	280.20	280.20	285,804	"	"	"
	"	남구 도화동	49-7	학	1,866.10	1,866.10	1,903,422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토지	남구 도화동	49-8	학	1,078.00	1,078.00	1,099,560	도시개발공사 양여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64-1	학	2,420.50	2,420.50	2,294,634	"	"	"
	"	남구 도화동	112-19	학	4,422.00	4,422.00	4,192,056	"	"	"
	"	남구 도화동	112-51	대	192.00	87.00	38,976	"	"	"
	"	남구 도화동	112-10 4	학	2,856.00	2,856.00	2,707,488	"	"	"
	"	남구 도화동	143-1	학	24.00	23.00	7,797	"	"	"
	"	남구 도화동	143-7	학	612.00	612.00	630,360	"	"	"
	"	남구 도화동	144-10	학	136.00	136.00	140,080	"	"	"
	"	남구 도화동	156-2	학	3,332.00	2,690.00	3,093,500	"	"	"
	"	남구 도화동	168-1	학	3,634.00	3,634.00	3,743,020	"	"	"
	"	남구 도화동	171	학	8,046.00	8,046.00	8,287,380	"	"	"
	"	남구 도화동	174-1	학	1,001.00	1,001.00	1,031,030	"	"	"
	"	남구 도화동	174-2	학	324.00	324.00	333,720	"	"	"
	"	남구 도화동	174-5	학	2,830.00	2,830.00	2,914,900	"	"	"
	"	남구 도화동	177-28	학	23.00	23.00	23,690	"	"	"
	"	남구 도화동	177-62	학	238.00	238.00	245,140	"	"	"
	"	남구 도화동	180-25	학	99.00	99.00	101,970	"	"	"
	"	남구 도화동	182-6	학	11.00	11.00	11,330	"	"	"
	"	남구 도화동	182-11	학	3,306.00	50.00	51,500	"	"	"
	"	남구 도화동	182-14	학	393.00	208.00	214,240	"	"	"
	"	남구 도화동	183-2	학	304.00	304.00	313,12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토지	남구 도화동	189	학	337.00	337.00	347,110	도시개발공사 양여	인천대학교 총장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190	학	1,054.00	1,054.00	1,085,620	"	"	"
	"	남구 도화동	191-1	학	5,368.00	5,368.00	5,529,040	"	"	"
	"	남구 도화동	191-2	학	658.00	658.00	677,740	"	"	"
	"	남구 도화동	191-4	학	142.00	142.00	146,260	"	"	"
	"	남구 도화동	192	학	178.00	178.00	183,340	"	"	"
	"	남구 도화동	193	학	10,962.00	10,962.00	11,290,860	"	"	"
	"	남구 도화동	193-2	학	2,552.00	2,552.00	2,628,560	"	"	"
	"	남구 도화동	193-3	학	56.00	56.00	57,680	"	"	"
	"	남구 도화동	193-4	학	20.00	20.00	20,600	"	"	"
	"	남구 도화동	193-5	학	2,469.00	1,737.00	1,789,110	"	"	"
	"	남구 도화동	193-6	학	72,821.00	9,860.80	10,156,624	"	"	"
	"	남구 도화동	194	학	602.00	602.00	620,060	"	"	"
	"	남구 도화동	195-1	학	522.00	522.00	537,660	"	"	"
	"	남구 도화동	195-2	학	608.00	608.00	626,240	"	"	"
	"	남구 도화동	196-1	학	1,200.00	1,200.00	1,236,000	"	"	"
	"	남구 도화동	196-2	학	19,671.00	18,841.00	19,406,230	"	"	"
	"	남구 도화동	197-1	학	324.00	324.00	333,720	"	"	"
	"	남구 도화동	197-2	학	79.00	79.00	81,370	"	"	"
	"	남구 도화동	198-1	학	225.00	225.00	231,750	"	"	"
	"	남구 도화동	198-2	학	60.00	60.00	61,800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토지	남구도화동	199	학	344.00	344.00	354,320	도시개발공사양여	인천대학교총장	1차변경
	"	남구도화동	200	학	136.00	136.00	140,080	"	"	"
	"	남구도화동	201	학	826.00	826.00	850,780	"	"	"
	"	남구도화동	203-3	학	37.00	37.00	38,110	"	"	"
	"	남구도화동	206-1	학	135,162.00	37,640.00	38,769,200	"	"	"
	"	남구도화동	265	학	957.20	957.20	321,619	"	"	"
	"	남구도화동	산28-4	임	198.00	198.00	187,704	"	"	"
	"	남구도화동	산28-5	임	397.00	397.00	376,356	"	"	"
	"	남구도화동	산28-6	임	99.00	99.00	101,970	"	"	"
	"	남구도화동	산31-4	전	126.00	126.00	129,780	"	"	"
	건물	남구도화동	26-65외 6필지			14,317.98	3,402,228	" (종합실습실)	"	"
	"	남구도화동	36-1외 3필지			25,517.40	7,469,114	" (본관)	"	"
	"	남구도화동	38-3외 1필지			8,308.56	2,524,020	" (학생회관)	"	"
	"	남구도화동	산24-2			51.43	1,234	" (본관화장실)	"	"
	"	남구도화동	26-65외 1필지			117.99	29,498	" (공대식당)	"	"
	"	남구도화동	산31-2외 3필지			111.28	23,591	" (샤워장)	"	"
	"	남구도화동	43-7외 8필지			1,189.74	423,942	" (학군단)	"	"
	"	남구도화동	38-3			14,125.64	4,259,164	" (대학원관)	"	"
	"	남구도화동	174-1외 12필지			2,832.25	1,047,217	" (제2공학관)	"	"
	"	남구도화동	174-1외 12필지			1,028.80	401,906	" (UTM실)	"	"
	"	남구도화동	38-3			1,088.40	333,656	" (학생회관썬클실)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2	건물	남구 도화동	36-8			188.64	6,602	도시개발공사 양여(실습실)	인천대학교 총 장	1차 변경
	"	남구 도화동	837			475.75	37,411	" (운동부합숙소)	"	"
	"	남구 도화동	43-7			14,533.37	6,024,572	" (실험강의동)	"	"
	"	남구 도화동	31-6			691.20	232,819	" (학생복지시설)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206.55	30,983	" (골프연습장)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100.00	15,000	" (기자재실)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761.25	145,915	" (학생회관별동)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650.00	242,970	" (TIC사무실)	"	"
	"	남구 도화동	36-1외 195			676.00	269,724	" (공동기기실습실)	"	"
	"	남구 도화동	31-6외 195			5,396.60	2,510,272	" (동북아학부생활관)	"	"
	"	남구 도화동	31-6			8,254.82	4,143,061	" (학산도서관)	"	"
	"	남구 도화동	38-3			396.00	212,652	" (제2학생복지동)	"	"
	"	남구 도화동	112-19 외2			1,485.80	683,471	" (창업보육센터)	"	"
	"	남구 도화동	38-3			252.15	132,379	" (노천극장)	"	"
	"	남구 도화동	260-1			148.50	77,963	" (기계과실습동)	"	"
2010-3	토지	남구 도화동	23-11	잡	2,181.0	669.0	329,817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총 장	2차 변경
	"	남구 도화동	23-14	학	6,622.0	6,622.0	6,820,660	"	"	"
	"	남구 도화동	23-15	학	1.0	1.0	1,030	"	"	"
	"	남구 도화동	26-10	학	109.0	109.0	112,270	"	"	"
	"	남구 도화동	26-11	학	1,190.0	1,044.3	1,075,629	"	"	"
	"	남구 도화동	26-13	대	833.0	593.0	610,79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분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3	토지	남구 도화동	26-16	전	294.0	74.0	33,744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총장	2차 변경
	"	남구 도화동	26-29	전	694.0	69.0	34,017	"	"	"
	"	남구 도화동	26-30	전	1,091.0	1,041.0	1,072,230	"	"	"
	"	남구 도화동	26-41	구거	469.0	119.0	22,372	"	"	"
	"	남구 도화동	26-59	전	221.0	15.0	6,840	"	"	"
	"	남구 도화동	26-65	학	10,185.0	10,185.0	10,490	"	"	"
	"	남구 도화동	26-66	전	172.0	92.0	46,460	"	"	"
	"	남구 도화동	26-67	전	565.0	255.0	128,775	"	"	"
	"	남구 도화동	26-80	구거	461.0	101.0	18,988	"	"	"
	"	남구 도화동	26-81	전	149.0	14.0	6,384	"	"	"
	"	남구 도화동	26-82	학	866.0	863.0	888,890	"	"	"
	"	남구 도화동	26-83	학	652.0	652.0	671,560	"	"	"
	"	남구 도화동	31-6	학	1,219.7	1,194.3	1,089,201	"	"	"
	"	남구 도화동	31-7	학	126.9	126.9	76,393	"	"	"
	"	남구 도화동	33-1	학	160.5	160.5	140,437	"	"	"
	"	남구 도화동	33-2	학	201.2	201.2	166,794	"	"	"
	"	남구 도화동	33-4	대	156.9	107.1	101,530	"	"	"
	"	남구 도화동	33-5	대	148.3	67.7	49,759	"	"	"
	"	남구 도화동	33-7	대	1,396.8	6.8	3,876	"	"	"
	"	남구 도화동	35-3	대	277.2	108.0	61,560	"	"	"
	"	남구 도화동	35-4	대	149.2	43.0	24,510	"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분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3	토지	남구 도화동	35-5	학	5,310.8	5,276.7	5,435,001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총장	2차 변경
	"	남구 도화동	35-6	학	166.7	166.7	171,701	"	"	"
	"	남구 도화동	35-8	학	692.2	155.3	159,959	"	"	"
	"	남구 도화동	38-3	학	86,681.0	13,415.8	13,818,274	"	"	"
	"	남구 도화동	38-5	학	74.0	74.0	76,220	"	"	"
	"	남구 도화동	38-14	학	31.0	31.0	31,930	"	"	"
	"	남구 도화동	38-16	학	3.0	3.0	3,090	"	"	"
	"	남구 도화동	38-17	학	44.0	44.0	45,320	"	"	"
	"	남구 도화동	38-18	학	134.0	134.0	138,020	"	"	"
	"	남구 도화동	38-20	학	142.0	142.0	146,260	"	"	"
	"	남구 도화동	39-19	학	70.0	70.0	72,100	"	"	"
	"	남구 도화동	43-7	학	114,602.5	57,403.7	58,551,774	"	"	"
	"	남구 도화동	43-8	학	852.2	852.2	869,244	"	"	"
	"	남구 도화동	43-9	학	535.0	535.0	545,700	"	"	"
	"	남구 도화동	43-20	학	4,059.0	2,113.0	2,155,260	"	"	"
	"	남구 도화동	43-21	학	1,623.9	1,623.9	1,656,378	"	"	"
	"	남구 도화동	43-22	학	3,267.5	1,166.0	1,189,320	"	"	"
	"	남구 도화동	43-23	학	1,079.2	80.0	81,600	"	"	"
	"	남구 도화동	43-24	학	9,529.1	9,529.1	9,719,682	"	"	"
	"	남구 도화동	43-25	학	370.9	370.9	378,318	"	"	"
	"	남구 도화동	43-26	학	998.9	998.9	1,018,878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3	토지	남구도화동	182-11	학	3,306.0	3,256.0	3,353,680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인천대학교 총장	2차 변경
	"	남구도화동	182-14	학	393.0	185.0	190,550	"	"	"
	건물	남구도화동	43-7			7.77.91	2,668,697	" (인문사회학부관)	"	"
	"	남구도화동	26-25 외 4필지			8,157.23	1,835,357	" (종합실습관)	"	"
	"	남구도화동	35-5			151.69	42,473	" (종합실습관식당)	"	"
	"	남구도화동	38-3외 1필지			39.6	950	" (화장실)	"	"
	"	남구도화동	38-3			44.8	1,075	" (변전실)	"	"
	"	남구도화동	43-7		49,852	24,926	4,924,655	" (체육관)	"	"
	"	남구도화동	43-7			49.64	1,191	" (체육관화장실)	"	"
	"	남구도화동	43-7			71.6	1,718	" (체육관화장실)	"	"
	"	남구도화동	43-7			170.04	47,611	" (체육관식당)	"	"
	"	남구도화동	43-7			59.62	1,430	" (체육관화장실)	"	"
	"	남구도화동	43-6			26.60	638	" (체육관변전실)	"	"
	"	남구도화동	43-7			397.44	54,449	" (학생회관)	"	"
	"	남구도화동	43-24 외 2필지			199.68	83,266	" (골프연습장)	"	"
2010-4	토지	서구심곡동	280			4,195.40	7,383,904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교통기획 과장	"
2010-5	토지	남구문학동	산70	묘지	3,599	3,527.82	388,060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4차 변경
	"	계양구다남동	100-88	임야	3	3.00	84	"	"	"
	"	계양구다남동	100-96	철도 용지	9	9.00	284	"	"	"
	"	계양구다남동	100-62	임야	118	118.00	3,728	"	"	"
	"	계양구다남동	100-77	임야	10	10.00	316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5	토지	계양구 다남동	100-95	철도 용지	82	82.00	2,591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4차 변경
	"	계양구 다남동	100-66	임야	969	969.00	30,620	"	"	"
	"	계양구 다남동	100-78	임야	223	223.00	7,046	"	"	"
	"	계양구 다남동	100-27	전	5	5.00	158	"	"	"
	"	계양구 다남동	100-26	전	116	116.00	3,665	"	"	"
	"	계양구 다남동	100-59	임야	700	700.00	22,120	"	"	"
	"	계양구 다남동	100-73	임야	227	227.00	7,173	"	"	"
	"	계양구 다남동	100-86	임야	3	3.00	94	"	"	"
	"	계양구 다남동	100-20	전	41	41.00	1,295	"	"	"
	"	계양구 다남동	100-9	전	162	162.00	5,119	"	"	"
	"	계양구 다남동	100-23	전	109	109.00	3,444	"	"	"
	"	계양구 다남동	100-72	임야	60	60.00	1,896	"	"	"
	"	계양구 다남동	100-24	전	198	198.00	6,256	"	"	"
	"	계양구 다남동	100-85	임야	552	552.00	17,443	"	"	"
	"	계양구 다남동	100-21	전	1	1.00	31	"	"	"
	"	계양구 다남동	100-58	임야	9	9.00	284	"	"	"
	"	계양구 다남동	100-57	전	72	72.00	2,275	"	"	"
	"	계양구 다남동	100-25	전	546	546.00	17,253	"	"	"
	"	계양구 다남동	100-80	임야	81	81.00	2,559	"	"	"
	"	계양구 다남동	100-84	임야	193	193.00	6,098	"	"	"
	"	계양구 다남동	85-7	답	38	38.00	1,200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5	토지	계양구 다남동	88-18	답	6	6.00	189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4차 변경
	"	계양구 다남동	88-23	답	14	14.00	442	"	"	"
	"	계양구 다남동	88-39	답	51	51.00	1,611	"	"	"
	"	계양구 다남동	88-22	답	62	62.00	1,959	"	"	"
	"	계양구 다남동	88-38	답	44	44.00	1,390	"	"	"
	"	계양구 다남동	88-21	답	44	44.00	1,390	"	"	"
	"	계양구 다남동	88-41	답	139	139.00	4,392	"	"	"
	"	계양구 다남동	88-20	답	123	123.00	3,886	"	"	"
	"	계양구 장기동	115-322	답	129	129.00	4,076	"	"	"
	"	계양구 장기동	115-269	답	42	42.00	1,327	"	"	"
	"	계양구 장기동	115-323	답	46	46.00	1,453	"	"	"
	"	계양구 장기동	115-235	답	13	13.00	410	"	"	"
	"	계양구 장기동	115-268	답	1	1.00	31	"	"	"
	"	계양구 장기동	115-320	답	85	85.00	2,686	"	"	"
	"	계양구 장기동	115-267	답	27	27.00	853	"	"	"
	"	계양구 장기동	115-319	답	10	10.00	316	"	"	"
	"	계양구 장기동	115-371	답	132	132.00	4,171	"	"	"
	"	계양구 장기동	115-266	답	1	1.00	316	"	"	"
	"	계양구 장기동	115-370	답	24	24.00	758	"	"	"
	"	계양구 장기동	115-321	답	127	127.00	4,013	"	"	"
	"	계양구 장기동	115-265	답	136	136.00	4,297	"	"	"

관리번호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산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5	토지	계양구 굴현동	451-119	답	15	15.00	553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4차 변경
	"	계양구 굴현동	451-421	답	8	8.00	295	"	"	"
	"	계양구 굴현동	451-415	답	142	142.00	5,239	"	"	"
	"	계양구 굴현동	451-301	답	195	195.00	7,195	"	"	"
	"	계양구 굴현동	451-300	답	49	49.00	1,808	"	"	"
	"	계양구 굴현동	451-420	답	39	39.00	1,439	"	"	"
	"	계양구 굴현동	451-95	답	14	14.00	516	"	"	"
	"	계양구 굴현동	451-413	답	125	125.00	4,612	"	"	"
	"	계양구 굴현동	451-471	답	248	248.00	9,151	"	"	"
	"	계양구 굴현동	451-298	답	69	69.00	2,546	"	"	"
	"	계양구 굴현동	451-470	답	288	288.00	10,627	"	"	"
	"	계양구 굴현동	451-299	답	85	85.00	3,136	"	"	"
	"	계양구 굴현동	451-414	답	65	65.00	2,398	"	"	"
	"	계양구 굴현동	451-419	답	82	82.00	3,025	"	"	"
	"	계양구 굴현동	451-418	답	466	466.00	17,195	"	"	"
	"	계양구 굴현동	451-297	답	207	207.00	7,638	"	"	"
	시설	6 개 역 사					토 목	371,894,082	"	"
	"	"					궤 도	13,213,557	"	"
	"	"					건 축	36,997,732	"	"
	"	"					기 설 비	39,901,658	"	"
	"	"					전 설 비	15,990,314	"	"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면 분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10-5	시설	6 개 역 사				일반전기	23,036,483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4차 변경
	"	"				전차선	3,631,136	"	"	"
	"	"				신 호 설 비	30,742,326	"	"	"
	"	"				통 신	25,727,619	"	"	"
	"	"				AFC	4,700,957	"	"	"
	"	"				전동차 72량 등	103,335,008	"	"	"
					이	하	빈	칸		

# ① 인천메트로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과 1호선 본선 및 계양역의 현물출자 시 미출자된 토지 등 자산에 대하여
  - 회계검증을 완료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인천메트로에 현물출자하여 공사의 경영수익을 증대하고자 함.
- 

## I. 추진방침

- 출자기준일 : 2009. 12. 31일
- 출자자산 검증방법 : 공인회계법인에 의한 대상자산 회계검증
  - ※ 회계검증 실시(삼덕회계법인 문정태 공인회계사외 2인)
- 출자자산 기준가격 결정
  - 건설사업비 : 지출액을 적산, 자산가액으로 산출하여 결정
    - 2003년 ~ 2008년 12월 : 세출결산서 기준
    - 2009년 12월 31일까지 : 지출부 기준
  - 취득 토지 : 무상 귀속된 국·공유지는 '09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출자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출자대상 여부, 면적, 지목, 합병, 소유자 등 확인

## II.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자본금)
  -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2조 5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Ⅲ. 그간 추진사항

- 2009. 06. 01 :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개통
- 2009. 06. 09 :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현물출자계획 수립
- 2009. 06 ~ 11 : 송도연장선 출자목록 등 기초자료 작성
- 2009. 12. : 출자내역 인천메트로와 협의 및 자산내역 확정
- 2010. 01 ~ 02 : 출자자산 회계검증 실시
- 2010. 03. 17 : 계양역 미출자 토지 추가출자 계획수립
- 2010. 03. 31 : 송도연장선 시설물 총괄 인계인수

### V.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세부내역)

- 기본현황

(단위 :m<sup>2</sup>/천원)

구 분	출자내역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시설물	6개 역사 토목 외 10건	-	669,170,877	송도연장선
토 지	문학동 산 70외 62필지	11,407.82	648,172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사

- 출자대상

- 출자자산 및 부채 인계

구 분	자 산 내 역	출자금액(원)
시 설 물(A)	송도연장선 6개 역사 토목, 궤도, 전동차 등	669,170,877,410
토 지(B)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일대 미출자 토지 포함	648,172,294
부 채(C)	도시철도채권, 공공자금관리기금	69,256,143,500
순현물 출자액 (A+B-C)		600,562,906,204
출자자산 총액 (A+B)		<b>669,819,049,704</b>

- 세부내역

구 분	계정과목	출자금액(원)	비 고
시설물(A)	토 목	371,894,082,509	
	궤 도	13,213,557,600	
	건 축	36,997,732,822	
	기계설비	39,901,658,801	
	전기설비	15,990,314,790	
	일반전기	23,036,483,300	
	전 차 선	3,631,136,340	
	신호설비	30,742,326,830	
	통 신	25,727,619,068	
	A F C	4,700,957,140	
	전 동 차	103,335,008,210	
토지(B)		648,172,294	
<b>자 산 합 계(A+B)</b>		<b>669,819,049,704</b>	
부채(C)	지 방 채	40,184,574,580	
	공공자금 관리기금	29,071,568,920	
부 채 합 계		<b>69,256,143,500</b>	

- 출자대상 토지 세부내역

구 분	자 산 내 역	출자금액(원)	면 적
합 계		648,172,294	11,408m <sup>2</sup>
토지(B)	1호선 미출자토지 - 문학경기장역 출입구 일부	388,060,094	3,528m <sup>2</sup>
	계양역 미출자토지 (건설교통부 국유지 무상취득 '09.7.10 인천시로 등기완료)	260,112,200	7,880m <sup>2</sup>

## VI. 향후계획

- 조례규칙(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시 의회 안건 상정
- 소유권 이전 및 자산 인계인수 : 시 ⇒ 인천메트로

※ 붙임자료

- 첨부 1 : 송도연장선 역사 위치도
- 첨부 2 : 송도연장선 역사시설물 관련사진
- 첨부 3 : 출자대상 토지목록

【첨부 1】

# 송도연장선 역사 위치도



【첨부 2】

# 송도연장선 역사시설물 관련사진



캠퍼스타운역 대합실 전경



지식정보단지역 승강장 전경



센트럴파크역 대합실 전경



테크노파크역 대합실 벽면



인천대입구역 승강장



국제업무지구역 : 채움, 묶기, 넓히기(작품명)

【첨부 3】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m<sup>2</sup>,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 준 가 격	재 산 관 리 관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11,407.82	648,172		
1	토지	문학동	산70	묘지	3,599	3,528.82	388,060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2	"	다남동	100-88	임야	3	3	84	"	
3	"	다남동	100-96	철도용지	9	9	284	"	
4	"	다남동	100-62	임야	118	118	3,728	"	
5	"	다남동	100-77	임야	10	10	316	"	
6	"	다남동	100-95	철도용지	82	82	2,591	"	
7	"	다남동	100-66	임야	969	969	30,620	"	
8	"	다남동	100-78	임야	223	223	7,046	"	
9	"	다남동	100-27	전	5	5	158	"	
10	"	다남동	100-26	전	116	116	3,665	"	
11	"	다남동	100-59	임야	700	700	22,120	"	
12	"	다남동	100-73	임야	227	227	7,173	"	
13	"	다남동	100-86	임야	3	3	94	"	
14	"	다남동	100-20	전	41	41	1,295	"	
15	"	다남동	100-9	전	162	162	5,119	"	
16	"	다남동	100-23	전	109	109	3,444	"	
17	"	다남동	100-72	임야	60	60	1,896	"	
18	"	다남동	100-24	전	198	198	6,256	"	
19	"	다남동	100-85	임야	552	552	17,443	"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m<sup>2</sup>,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 준 가 격	재 산 관리관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20	토지	다남동	100-21	전	1	1	31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21	"	다남동	100-58	임야	9	9	284	"	
22	"	다남동	100-57	전	72	72	2,275	"	
23	"	다남동	100-25	전	546	546	17,253	"	
24	"	다남동	100-80	임야	81	81	2,559	"	
25	"	다남동	100-84	임야	193	193	6,098	"	
26	"	다남동	85-7	답	38	38	1,200	"	
27	"	다남동	88-18	답	6	6	189	"	
28	"	다남동	88-23	답	14	14	442	"	
29	"	다남동	88-39	답	51	51	1,611	"	
30	"	다남동	88-22	답	62	62	1,959	"	
31	"	다남동	88-38	답	44	44	1,390	"	
32	"	다남동	88-21	답	44	44	1,390	"	
33	"	다남동	88-41	답	139	139	4,392	"	
34	"	다남동	88-20	답	123	123	3,886	"	
35	"	장기동	115-322	답	129	129	4,076	"	
36	"	장기동	115-269	답	42	42	1,327	"	
37	"	장기동	115-323	답	46	46	1,453	"	
38	"	장기동	115-235	답	13	13	410	"	
39	"	장기동	115-268	답	1	1	31	"	
40	"	장기동	115-320	답	85	85	2,686	"	
41	"	장기동	115-267	답	27	27	853	"	
42	"	장기동	115-319	답	10	10	316	"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m<sup>2</sup>,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 준 가 격	재 산 관 리 관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43	토지	장기동	115-371	답	132	132	4,171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44	"	장기동	115-266	답	1	1	316	"	
45	"	장기동	115-370	답	24	24	758	"	
46	"	장기동	115-321	답	127	127	4,013	"	
47	"	장기동	115-265	답	136	136	4,297	"	
48	"	굴현동	451-119	답	15	15	553	"	
49	"	굴현동	451-421	답	8	8	295	"	
50	"	굴현동	451-415	답	142	142	5,239	"	
51	"	굴현동	451-301	답	195	195	7,195	"	
52	"	굴현동	451-300	답	49	49	1,808	"	
53	"	굴현동	451-420	답	39	39	1,439	"	
54	"	굴현동	451-95	답	14	14	516	"	
55	"	굴현동	451-413	답	125	125	4,612	"	
56	"	굴현동	451-471	답	248	248	9,151	"	
57	"	굴현동	451-298	답	69	69	2,546	"	
58	"	굴현동	451-470	답	288	288	10,627	"	
59	"	굴현동	451-299	답	85	85	3,136	"	
60	"	굴현동	451-414	답	65	65	2,398	"	
61	"	굴현동	451-419	답	82	82	3,025	"	
62	"	굴현동	451-418	답	466	466	17,195	"	
63	"	굴현동	451-297	답	207	207	7,638	"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m<sup>2</sup>, 천원)

관리 번호	재 산 구 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 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 리 관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669,170,877			
1	토목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 6개역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71,894,082	인천메트로 자분금확보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2	궤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3,213,557	"	"	
3	건축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6,997,732	"	"	
4	기계 설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상수도공사비					39,901,658	"	"	
5	전기 설비	공사비, 설계비, 전기요금, 전기설비 검사비, 시설부대비					15,990,314	"	"	
6	일반 전기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3,036,483	"	"	
7	전차선	시설비, 기자재비, 조달수수료					3,631,136	"	"	
8	신호 설비	설계비, 공사비, 관급-외차재, 달수수료, 관세, 감리비, 시설부대비					30,742,326	"	"	
9	통신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5,727,619	"	"	
10	AFC	자재비, 시설부대비					4,700,957	"	"	
11	전동차	전동차72량, 기존전동차 개조비, 시험장치, 모의운전연습기					103,335,008	"	"	

# 관계 법령 발췌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 ③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4조(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7>](#)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 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